

국무조정실 ·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3월 11일
국무조정실장

1. 선발예정인원(2개 분야, 총 10명)

지원코드	채용분야	선발인원	근무예정부서(근무지)
인턴1	행정	9명	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(세종특별자치시)
인턴2	홍보	1명	

※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(다른 코드 중복지원 불가)

가. 근무조건

- (신 분) 청년인턴(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- (계약기간) 채용일('24.4월중)로부터 약 4개월 * 계약종료일: '24.8.31.
- (보 수) 시급 9,860원(월 206만원 내외)
 - ※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
- (근무시간) 주 5일, 40시간
- (후생복지)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 - ※ 출퇴근 지원 및 숙소 지원 없음

나. 주요 업무 내용

지원코드	채용분야	담당업무
인턴A	행정	○ 민생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회의 지원 ○ 첨단산업·탄소중립 등 분야별 국내·외 동향 조사, 해외자료 조사 ○ 정책 관련 언론보도 및 통계자료 분석 ○ 인사업무(채용, 교육 등) 지원
인턴C	홍보	○ 국정과제 관련 홍보

※ 주요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

2. 응시 자격 및 우대 · 가산요건

① 응시자격요건 [최종시험(면접시험) 예정일 기준]

○ 「청년기본법」 상 청년의 연령(19세 이상 34세 이하)에 해당하는 사람

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「병역법」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

· 군복무기간 1년미만: 1세, 1년이상~2년미만: 2세, 2년이상: 3세 연장

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

【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(가족 채용 제한)】

1. 소속 고위공직자
2.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3.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4.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
② 채용분야별 우대요건 [원서접수 마감일 기준]

채용분야	우대요건(해당자에 한함)
행정	○ 국내·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(예정)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 또는 관련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자 - 관련 학과: 행정, 정책, 사회, 경제·경영, 법, 세무·회계, 통계, 산업·환경공학 등
홍보	○ 국내·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(예정)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 또는 관련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자 - 관련 학과: 신문방송, 언론·홍보, 디자인, 그래픽, 웹디자인,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등

③ 가산요건 [원서접수 마감일 기준, 행정분야에만 적용]

○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, 만점의 10% 또는 5% 가산

※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(국가보훈부 상담센터 ☎1577-0606)

※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
[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]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2항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제1항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0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
3. 시험방법

① 1차시험 : 서류전형

○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※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, 우대요건 참고

○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,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

※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,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

② 2차시험 : 면접전형

※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※ (평정요소)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
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'하'로 평정하거나,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'하'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,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

※ "상"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"중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

4. 채용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4.3.11.(월)~'24.3.21.(목)	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,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
원서접수	'24.3.11.(월)~'24.3.21.(목)	■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(전자우편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4.3.27.(수)	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면접전형	'24.4.2.(화)	■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
최종합격자 발표	'24.4.4.(목)	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
5. 응시원서 제출

- 제출기간 : '24. 3. 11.(월) ~ '24. 3. 21.(목) 18:00

- 제출방법 : 관련 서류는 **e-mail로만 접수**(확인메일 개별발송예정)

- e-mail: opminsa@korea.kr

※ e-mail 제목은 반드시 "성명(지원분야)"로 기재

* 예시: 홍길동(행정)

※ 전자우편 접수는 **마감일('24.3.21.) 18:00까지** 도착분에 한함

6. 제출 서류 안내

※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

※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

서류	비고
I. 공통사항(필수제출서류)	
1. 응시원서 1부 (별지 1호)	· 자필 서명 필수
2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2호)	· A4 2매 이내로 작성(형식·구성 자유)
3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(별지 3호)	· 자필 서명 필수
II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함)	
4.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1부	· 재학증명서, 졸업(수료)증명서 등
5.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	· 해당자에 한함

7. 유의사항

-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(☎044-200-28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